**효자아트홀 대관 신청서**

**1. 신청내용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공 연 명** |  | | | |
| **공연단체(인)** |  | | **장 르** |  |
| **공연일시** | 년 월 일 시 분 ~ 시 분 | | **공연시간** | 시간 분 |
| **무대설치** | 년 월 일 시 분 ~ 시 분까지 | | **공연인원** | 명 |
| **리 허 설** | 년 월 일 시 분 ~ 시 분까지 | | **스텝인원** | 명 |
| **연 락 처** | 성 명: | e-mail: | | |
| 휴대폰: | 회 사: | | |
| **주 소** | 우) | | | |

**2. 신청대상 :** 포항 인근지역 문화예술 단체

**3. 대관 시 지켜야 할 사항**

⭘ 효자아트홀 대관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⭘ 대관은 주중에만 가능하며, 대관 가능일 외 신청은 불가하오니 양지바랍니다.

⭘ 효자아트홀 사정에 따라 공연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⭘ 대관공연은 주최측에서 진행하며, 효자아트홀은 시설과 장비사용을 지원합니다.

**포스코 효자아트홀 대관규정 준수를 약속하며, 위 대관을 신청합니다.**

20 년 월 일

신청자 (인)

poscoLogo보내실 곳: 효자아트홀 대관담당/[px992116@posco.com](mailto:px992116@posco.com)/문의:054) 221-9764

**효자아트홀 대관규정**

**제1조(목적)**

이 규정은 효자아트홀(이하 " 아트홀 "이라 한다)의 대관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

운영과 인근지역 문화예술 수요충족 및 창작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대관범위)**

1. 아트홀의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시설 (이하 “ 대관시설 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

다음과 같다.

가. 기본시설 : 공연장

나. 부대시설 : 위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

2. 아트홀은 대관시설의 관리유지, 입장통제,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.

**제3조(대관신청)**

1. 제2조의 시설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(이하 " 신청인 "이라 한다)는 대관신청서와 공연계획서

(큐시트포함), 주최 단체의 이력 및 경력, 출연자 명단을 아트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주중 대관을 원칙으로 한다.

3. 신청기간은 아트홀 운영 일정에 별도 공지한다.

4. 대관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제공된 양식으로 한다.

**제4조(대관심의위원회)**

1. POSCO는 제2조 제1호 시설의 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아트홀內에

대관심의위원회(이하 " 위원회 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2.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5조(대관승인)**

1. 아트홀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내에 이를 심사, 대관승인 가부결과를 통지 한다.

2. 아트홀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
\* 대관일정이 확정된 이후라도 아트홀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

**제6조(대관제한 및 금지)**

1. 아트홀은 다음의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
가. 종교적, 상업적, 정치적 행사로 구성된 공연

나. 학교행사 및 학원행사 **(단, 포스코 산하 교육재단은 사내행사 기준 적용)**

다. 합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관취소 단체(1년간 대관 제한)

라. 전년도 관람인원이 250명 이하인 경우

마. 동일단체(인)가 연간 1회 이상 출연하거나 대관을 신청할 경우

바. 기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

2. 위 1항에 근거한 대관의 제한 또는 금지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 라도 아트홀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**제7조(사용자의 의무 및 배상책임)**

1 .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아트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, 아트홀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.

2 .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

**제8조(사용자의 안전관리)**

1 .아트홀은 공연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,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2. 사용자가 아트홀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100kw 이상의 외부조명 및 20kw이상의 음향장비 등을 사용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 안전 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.

3. 제2항의 안전점검은 아트홀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.

4.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트홀은 시설사용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**제9조(사용자의 설비)**

1 .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(이하 " 시설물 "이라 한다)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

아트홀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

2 .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3.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아트홀 에서 직접 원상복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만약 아트홀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**제10조(입장제한)**

아트홀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.

1. 타인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

2. 음주 및 무단 출입자, 위험물 소지자

3. 기타 아트홀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**제11조(배상책임)**

1 .아트홀은 사용자의 대관 계약을 취소, 정지 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2. 사용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아트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

하며,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

3.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,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**제12조(적용규정)**

이 규정은 아트홀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트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

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.